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, 약제부서장

제 목 **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(스티렌정)**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880(2014.5.30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2014-75호(2014.5.26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"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에 대한 효력을 2014아10413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2014년 6월 20일까지 일시 정지한다"고 결정함(2014.5.29)에 따라

3. 2014년 6월 20일까지는 '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'은 위 개정 고시 이전(아래 표 중 '고시 개정 전') 내용임과 2014아10413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.

※ 참고 - 고시 개정 전 · 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

구분	고시 개정 전	고시 개정 후
Artemisia asiatica 95% ethanol ext. 경구제 (품명 : 스티렌정 등)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아 래- 가. 급성 위염,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(미란, 출혈, 발적, 부종)의 개선 나. '비스테로이드항염제(NSAIDs)로 인한 위염의 예방'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	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아 래- ○ 급성 위염,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(미란, 출혈, 발적, 부종)의 개선  <b>&lt;삭제&gt;</b>

끝.

**대 한 병 원 협 회 장**



대리 유소영 차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284 ( 2014.05.30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ysy@kha.or.kr